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006-제32호

제출일자 : 2006. 6. 15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사유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읍·면·동별 복지위원의 정수를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규정에 복지위원 항목 추가(안 제1조)

나. 읍·면·동별 복지위원 정수을 정함(안 제14조의2)

○ 인구10,000명이하: 2명

○ 인구 10,000명 초과 20,000명 이하 3명

○ 인구 20,000명 초과 30,000명 이하 4명

○ 인구 30,000명 초과 5명

4. 주요토의과제 : 해당사항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 : 기획담당관실

라. 기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2) 입법예고(2006. 5. 10 - 2006. 5. 31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.

제1조 중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 ” 을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·제8조”로 하고, “제1조의4” 다음에 “·제2조제3항”을 삽입하며, “필요한” 다음에 “사항과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”을 삽입한다.

제14조의2(복지위원의 정수)읍·면·동별 복지위원의 정수는 2명이상으로하되,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이 한다.

1. 인구10,000명이하: 2명
2. 인구 10,000명 초과 20,000명 이하 : 3명
3. 인구 20,000명 초과 30,000명 이하 : 4명
4. 인구 30,000명 초과 : 5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제104회 - 총무위 부록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	제명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·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와 사천시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·제8조----------·제2조제3항---------- 사항과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------
<신설>	제14조의2(복지위원의 정수)읍·면·동별 복지위원의 정수는 2명 이상으로하되,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이 한다. 1. 인구10,000명이하: 2명 2. 인구 10,000명 초과 20,000명 이하 : 3명 3. 인구 20,000명 초과 30,000명 이하 : 4명 4. 인구 30,000명 초과 : 5명

관 련 법 령 발 췌

【사회복지사업법】

제8條 (福祉委員) ①市長·郡守·區廳長은 邑·面·洞의 社會福祉事業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邑·面·洞單位에 福祉委員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福祉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,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福祉委員의 資格·職務·委囑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

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】

제2조 (복지위원)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·면·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이 위촉한다. <개정 2004.9.6>

1. 당해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②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③복지위원의 정수는 읍·면·동별로 각 2인이상으로 하되,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·군·구(자치구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의 조례로 정한다.

④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.

1. 관할지역안의 저소득 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모자가정·요보호자등 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(이하 이 항에서 "사회복지대상자"라 한다)에 대한 선도 및 상담
2.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3.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,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
4.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